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178호

「유료도로법」(법률 제17743호)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관련 내용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09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제안 모집 공고

1. 공고기간 : '23. 9. 21.(목) ~ '23. 10. 12.(목)
2. 신청자격 : ①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②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 
\* 단일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신청불가
3.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주요내용
  - 지정기간 : '24. 1. 1. ~ '28. 12. 31.
  - 주요업무 : 「유료도로법」 제23조의7에 따른 업무 등
  - 재 원 : 국가 예산지원 및 기관 자체예산 활용
4. 신청방법 :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고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 
\*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, 알림마당-공지사항)  
\*\*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
(전화 044-201-3903, 팩스 044-201-5591, 이메일 sunegg@korea.kr)
5. 추진일정 /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  - 신청서 접수 : '23. 9. 21.(목) 09:00 ~ '23. 10. 12.(목) 18:00  
\*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
  - 지정대상자 선정 : '23. 10월 중 / 심사 등 일정은 추후 확정하여 별도 안내
  - 지정 공고 : '23. 12월 중 /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관보 게재
6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  - 신청서, 기관소개서, 운영계획서, 관련 실적  
\* 반드시 쪽수를 기재 / 모든 서류는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
  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  - 지정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, 국가 예산지원도 예산편성에 따라 유동적  
\* 예산 미확보 시 기관 자체의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여야 함
  - 센터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의 운영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보완·수정되어야 하며, 그 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함  
\*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